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8. 10. 15. (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 의 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8년 10월 2일
- 회부일자: 2018년 10월 5일

3. 개정이유

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
- “교원단체” 를 “교직원단체” 로 변경(안 제1조부터 제6조)
- 교직원단체의 범위 확대(안 제3조)
  -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
  -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
  -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
- 보조사업의 범위 세분화(안 제4조)
  -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,
  
- 교직원단체의 범위에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과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,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,
  
-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교직원 단체가 확대되어,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